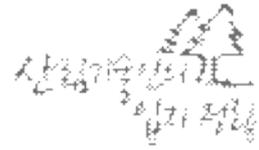




한국산림기술인회  
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

# 보도자료

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총 3쪽(붙임 1쪽 포함)
배포일시	2024. 6. 21.(금요일)	담당부서	일반사업본부
담당부서장	전제은 본부장	담당자	노다운 사원(042-489-855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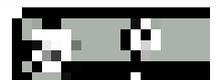
## 한국산림기술인회

### 산림기술자 교육·훈련 이수 시기 완화 노력 '결실'

- 산림기술법 일부 개정 ... 지난해부터 산림청 소관부서 매월 실무협의 진행 -

-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산림기술자 교육·훈련 이수 시기 완화에 노력한 결실을 맺었다.
- 21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이날 산림기술자의 교육·훈련 이수 시기가 완화되는 내용의 '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'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.
- 이는 산림기술자의 교육·훈련 이수 시기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한 것이 개정된 법률의 골자다.
- 개정 전 신규교육자는 최초 업무수행일로 부터 1년 이내, 정기교육자는 이전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 이수해야 하는 등 교육 기한이 일자기준으로 산정돼 있었다.
- 이에 산림작업 현장 특성상 교육기관이 먼 거리의 타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비교적 짧은 교육 이수 시기의 고충 등이 맞물리면서 기술자들의 교육·훈련 이수 시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는 민원이 빈번했다.

-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기술인회는 대민 서비스를 수행하며, 교육 기간 혼선, 교육 미이수 및 자격정지 등 기술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에 나섰다.
- 특히 지난해부터 산림청 소관부서와 매월 실무협의를 진행하며,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진 결과, 산림기술자 교육·훈련 이수 시기가 완화되는 내용의 ‘산림기술법’ 개정안이 나왔다.
- 살펴보자면 신규교육자는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이내, 정기교육자는 신규교육 이수기한의 다음 해부터 매 3년 이내로 교육 이수 기한이 완화됐다.
- 이를 통해 기술자들은 차기 교육 이수 기한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교육 이수 기한 혼선 등 그동안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- 아울러 기술인회는 교육·훈련 이수 시기 완화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통해 원활한 민원 처리와 기술자들의 권익 증진에 힘쓰는 방침이다.
- 기술인회 관계자는 “그동안 기술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활발하게 산림청 소관부서와 소통한 결과, 기술자들의 교육·훈련 이수시기 부담감을 조금 이나마 덜은 것 같다”고 전했다.



# 산림기술자 교육 · 훈련 이수시기 완화

산림기술법 시행규칙 개정안

신규교육 대상자 



관련 업무 최초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의 **다음 해 12월 31일까지**

정기교육 대상자 



신규 교육 이수한 해의 **다음 해부터 매 3년마다 이수**

교육일정 및 이수 관련 문의



한국산림기술인회  1522-5936

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



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<https://ftims.forest.go.kr>



사진 1 = 21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이날 산림기술자의 교육·훈련 이수 시기가 완화되는 내용의 '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'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.